CCTV설치·운영에관한규정 4-5-8

규정번호 4-5-8
제정일자 2011.9.19
최근개정 2018.8.27
개정차수 2차 개정
관리부서 총무회계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이하 “우리대학” 이라 한다)의 CCTV 설치 · 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우리대학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내의 공공질서 유지 및 사고예방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화상정보” 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 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 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 · 저장 · 편집 · 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우리대학이 범죄예방 · 증거확보 · 시설안전 · 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 ·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우리대학이 설치·운영하는 CCTV로서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화상정보의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화상정보 수집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2(사전의견수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총장은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3(운영·관리 방침 수립) 총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관의 지정) ① 총괄책임관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운영책임관은 총무회계팀장으로 하며, 담당부서는 총무회계팀(경비 및 보안)으로 한다.(개정 2017.02.27., 2018.08.27.)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우리대학의 CCTV 설치 · 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 ·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CCTV 열람 및 각종 민원 사항의 관할은 총무회계팀에서 하고, CCTV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의 관할은 구매시설팀에서 한다.(항 추가 2018.08.27)

제6조(안내판의 설치) ①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별표 1)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 · 책임관 · 연락처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대학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2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7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 · 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 ·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보호조치 등) ①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CCTV의 접근권한은 책임관, 책임관의 직근 상급자, 담당부서의 담당자, 위탁기관 담당자로 한다.

③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가 보관되는 장소는 접근권한 부여자 외에는 출입을 제한한다.

④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⑤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CCTV 설치·운영 책임관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CCTV 설치·운영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1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 및 삭제는 녹화장치의 용량(30일 이내)에 의한다. 다만 중요한 정보는 별도 백업하여 저장한다.

제3장 보 칙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9조 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CCTV안내판 문구

CCTV 녹화중	
설치목적	건물방호 및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
설치범위	출입구 및 건물내 (24시간 촬영)
책 임 자	사무처장
민원/열람	총무회계팀 (☎300-1027 ~8)
파손/수리	구매시설팀 (☎300-1031)

명지전문대학
MYONGJI COLLEGE

<별표 2> CCTV 화상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

CCTV 화상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

부서명(학과)		성 명		
교 번(학번)		전화번호	전 화	
생 년 월 일			휴대폰	
CCTV 설치장소				
열람 및 제공 요청 일시	년 월 일(시 분) ~ 년 월 일(시 분)			
열람 및 제공 사유				

제 출 일 :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명지전문대학 사무처장 귀하

1. CCTV 촬영시간 , 화상정보 보유기간은 15일입니다.
2.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열람 및 제공시 정보보호관리법에 저촉됩니다.

총무팀	담 당	팀 장	처 장